

I. 문제 제기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남성 동성간 결합의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에 준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정 건전성 등 공익적 요소와 동성간 결합은 사실혼과 유사한 보호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관계로 인정될 수 없어 무직인 파트너에게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었다. 이는 동성간 결합을 혼인에 준해 보호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 입법적 근거가 없는 사법의 관여였다. 그런데, 석 달이 채 안된 4월26일에는 서구에서 동거확산, 혼인을 감소, 혼외출생자 비율 증가를 통해 혼인 가족질서를 뒤흔들고 성인들의 욕구를 위해 출생 아동의 정서적, 육체적 학대 가능성을 현저히 높였던 비혼동거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시도되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인 남녀간 혼인, 혼인 내의 성관계와 출산이라는 혼인-성관계-출산의 삼각의 가족 형성 질서를 회피하여 간이하게 가족을 구성하거나 헤어질 수 있게 설계된, 성인 욕구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명시적 입법이나 선례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등법원의 한 재판부가 나서 혼인관계에 대한 보호를 동성간 결합에 확대하려는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 과도한 사법적 개입의 근거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생활동반자법안은 동거에 대한 법적 지원을 명기하여 파트너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감정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동거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사회복지적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위의 고등법원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을 정당화하게 되며 지속적이지 못한 관계를 성립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 동거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서 태어날 자녀 그리고 혼인을 감소를 통해 사회의 기반인 가족제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래서는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논증에 대한 비판, 프랑스,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 생활동반자법(시민결합법)이 가져온 가족-혼인관계의 변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본 논문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수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판례 비판 부분을 추가한 것임을 미리 알린다.

II. 동성간 결합을 사실혼에 준해 보호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1. 사실관계와 서울고법 2023.2.21.선고 2022누32797 판결

남성 A와 B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했다. 남성 B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남성 B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행정1-3부)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²⁾하여 항소를 인용하였다. 남성 A(직장가입자)와 남성 B(무직)의 동거 관계를 ‘동성결합’으로 파악하면서 혼인신고 없이 혼인 의사와 외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B에게도 인정하면서 B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으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재정건전성 등 공익적 요소와 민법상 사실혼 개념에 기반해 동성결합은 사실혼과 유사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공단의 B에 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적법하다고 보면서 B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불허했다.

2. 건강보험공단법의 적절한 적용인가 ?

건강보험공단은 취업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로서, 국내 거주 무직자에게는 ‘지역가입자’로서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되면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지역가입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준다.

현재 건강보험법 기타 어떤 법령에서도 동거 특히 동성(同性) 간 동거를 가족이나 사실혼에 유사한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에서는 양성(兩性)에 기반한 혼인 가족 질서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제36조 1항)한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동성 간 동거를 ‘동성결합’으로 사실혼과 차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이들의 관계를 가족·사실혼에 준해서 보호하겠다는 판시를 한 것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논증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가 잘못된 신념, 즉 왜곡된 혼인·가족관에 근거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법률·시행령이 아닌 내부 업무지침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포함시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오고 있는 바, 사실혼은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관계에서만 법적으로 보호되어 왔다. 혼인 의사 없는 이성 간 동거나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라도 혼인이 불가능한 동성 간 동거는 사실혼 관계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법령·판례가 대한민국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2)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판결의 맥락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사실혼, 즉

2) 서울고등법원 2023.2.21.선고 2022누32797 판결

중혼적 사실혼이나 근친 간 사실혼에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³⁾을 내렸다. 그런데 대상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혼인할 수 없는 남성 동성 간 동거도 '사실혼과 같은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며 사실혼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선량한 풍속·혼인질서, 가족관계에의 파장, 생활동반자법안이나 동성혼에 대한 여론의 시각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남성 B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총합 115,560원으로 한 달 약 14,500원이다. 통상 이 수준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1심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을 꺼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법정 투쟁 의지, LGBT 옹호 단체의 후원 및 트랜스젠더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류 있는 판결을 유도해 내는데 기여하였다. 이 소송과 판결이 진정 월 1만5천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회적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동성 결혼을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기획소송인지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이러한 기획소송이 야기한 돌출적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3. 건강보험법 판결의 네 가지 문제점

(1) 빈약한 법적 근거와 오류 있는 논증

1) 현행 법령과 국제법적 근거 없음

첫째 대한민국이 가입한 어떤 국제조약도 명시적으로 동성 간 결합의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⁴⁾ 국제연합에서도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라는 결정이나 권고도 회원국에 내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어떤 법령에서도 동성결합이나 동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예가 없다. 참고로 국회에 제출되었던 동거보호법안(생활동반자법안)은 여론의 반발로 철회되었다. 그럼에도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의 한 재판부가 동성결합의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와 다를 바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동성결합 보호입법을 한 것과 유사하다. 이는 월권적 사법 판단에 해당한다. 오히려 자녀와 함께 있는 한 당사자가 다른 동성의 성인 당사자와 동거함을 장려하는 법제는, 아래에서 보듯, 그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다.

3) 대법원 1996.9.20. 선고 96므530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4) 비록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인권재판소가 동성혼 여부는 EU 회원국 각국의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나 동성간 결합을 인정할 것을 요구(CASE OF OLIARI AND OTHERS v. ITALY(Applications nos. 18766/11 and 36030/11)하였지만,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이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터키에,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는 유럽 연합에 소속되어 있지만 동성간 결합을 수용하는 시민결합, 동반자 내지 동거법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논증의 오류

둘째, '성적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남아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판시도 오류를 포함한다.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1993년 연구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했지만, 후속 연구들에서 동성애 유전자 주장은 부정되어 왔다. 2018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동성애 경험 있는 47만7522명의 유전체 연구에서 동성애 관련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결과가 <사이언스(Science)>지(2019년)에 발표되었다. 동성애가 환경적·후천적 요인에서 비롯된 거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지만, 이미 미국과 서유럽에서 동성결혼법까지 제정된 후였으며,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성적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오류 있는 인식과 향후 차별들도 언젠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망까지 드러내고 있다.

(2) 이성 동거 확산

1) 혼인을 감소와 혼인 관계 파괴

동성결합에 관한 판례는 이성간 동거커플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생성과 해소가 혼인보다 용이하기에 혼인에 대한 부담감 해소라는 방편으로 '동성 간 및 이성 간 동거 문화 확산으로 이어진다. 아래 [그림]으로 제시되는 바, 동거를 법으로 수용하여 보호하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는 모두 혼인을 감소, 혼외 출산의 증가, 이혼율 증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시민연대계약이나 생활동반자제도를 수용한 국가들에서 이 제도가 이성 동거 커플에 확대되며 혼인에 비해 결속력이 약해 부담이 적은 시민연대나 생활동반자가 선호되면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2) 출생 아동의 권익 침해

혼전 동거를 경험한 부부는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혼인 후 이혼율이 현저히 높다. 이혼시 출생한 아동에게 상처를 남긴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가 결혼할 경우 이혼할 가능성은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 대비 45% 높고, 이혼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자녀가 이혼할 가능성은 전술한 비이혼 가정 대비 91% 더 높다는 연구(Nicholas H. Wolfinger, 2005)⁵⁾도 있다. Wolfinger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자녀는 10대에 결혼할 가능성과 이혼할 가능성도 높다.⁶⁾ 손쉬운 동거와 헤어짐, 이혼율 증가, 혼외 출산율 증가는 출생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이들이) 성장하여 혼인을 감소, 이혼율·동거율 증가로 나타나 다시 혼외 출생 증가로 이어진다. '동거 확산→

5) Nicholas H. Wolfinger, 『Understanding the Divorce Cyc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age 87,

6) Nicholas H. Wolfinger, "Parental Divorce and Offspring Marriage: Early or Late?", Social Forces, 82, 1, 2003, pages 337-353.

이혼율·혼외 출산을 증가→아동의 정서적 불안→ 혼인을 감소, 이혼·동거율 증가라는 가족 관계의 중대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소중한 가족의 기반이 흔들림을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동성 결혼의 합법화 가능성: 보조생식기술 이용으로 출생한 아동의 권익 침해

동성 커플의 증가와 평등 원칙 적용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부여되었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 커플의 생존 ‘상대방 파트너’에게도 확대 적용한 U.S. v. Windsor 판결(2013년) 이후 2년 만에 동성혼 합법화 판결(Overgefell v. Hodges)이 나왔다. 영국의 2004년 생활동반자법(동성커플의 법적 부부에 준하는 기본권 보장)은 2014년 동성결혼법으로, 프랑스의 1999년 시민연대계약(결혼하지 않아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 결합 제도)은 2013년 동성결혼과 입양 합법화로 이어졌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이성 부부에게 허용되었던 보조생식기술(정자난자기증,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동성부부에게 인정되거나 입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보조생식기술에 의해 동성 커플이 양육하게 되는 자녀는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는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아동은 잃어버린 보 또는 모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며 지속적인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는 그 아동에게는 자연적 본성이자 자연적 권리에 해당하기에, 동성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자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8조는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고 규정한다. 동성커플이 양육하는 아동의 정서·정신보건 전반에 관한 Mark Regnerus의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적 부모인 부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 대비 동성커플이 양육하는 아동이 자살충동, 우울증, 흡연 과다, 성병, 강요에 의한 성관계, 원 가족의 안전, 관계의 질, 범죄행위에서 통계상 중대한 차이(부정적 결과)를 보인다.⁷⁾ Paul Sullins에 따르면, 동성 부모의 자녀가 정서나 행동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이성부모의 자녀에 비해 두 배 높았다.⁸⁾

동성간 결합이나 이성간 비혼동거 등을 다양한 가족형태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혼인관계로

7) Mark Regnerus, How Different are the Adult Children of Parents who have Same-sex Relationships? Findings from the New Family Structures Study, Social Science Research(SSR) vol.41 Issue 4, 2012, p.752-770.

8) Donald Sullins, Emotional Problems among Children with Same-sex Parents: Difference by Defini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Society and Behavioral Science 7,2 (2015), p.99-120.

형성된 가족에 준해 법적인 보호를 하게 될 때, 동거를 생각하는 잠재적 파트너 관계에 있는 이들은 감정에 기반하여 지속적이지 못한 관계를 성립하는 것을 권장받는 형국이 된다. 미국에서는 동성간 결합 당사자들에게 혼인상 배우자에 준하는 세법상 혜택을 인정하는 연방대법원 판결 Winsor v. U.S.(2013)이 나온 후 2년이 지나 Obergefell v. Hodge (2015)판결을 통해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주 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소위 생활동반자 입법의 결과는 당사자들에게는 헤어짐의 아픔, 아동에게는 정서적 상처, 육체적 방임·학대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며 동성간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해 동성혼 합법화의 수순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매우 높여 왔다. 그런데, 헌법 제36조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혼인, 가족질서를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법원이 명시적 법적 근거도 없이 동성결혼의 가능성을 높이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다.

III.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제: 프랑스, 영국과 네덜란드

1. 프랑스의 시민결합(PACS)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을 도입해 민법전에 규정하였다. 동성간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PACS의 주된 입법 목적이었다.⁹⁾ 그 전에 프랑스 사법부는 오랫동안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동성혼도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동성커플에 대해 사실혼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아 왔었다. 그런데, 1990년에 입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따르지 않고 민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의 동거가 동성간이나 이성간에도 성립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동성커플의 동거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PACS를 민법에 도입하게 되었다.¹⁰⁾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커플에게는 상속세감면, 세금납부, 부부 자격으로 하는 매매 등의 권리를 보장해 주며, 미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¹⁾ PACS는 일방 당사자의 해지 의사로 종료될 수 있고, 일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PACS를 해소할 수 있다. 동거의 해지를 시청 공무원과 공증인에 신고하면 등록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제3자에게도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¹²⁾ PACS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은 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주로 이성 커플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¹³⁾ 2013년 동성결혼을 민법 개정으로 수용한 이후 PACS는, 본래

9) 이상욱, 프랑스 가족법의 동향, 가족법연구 Vol.32 No.2 [2018], 8면.

10) 위의 글.

11)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옥·김수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년, 216면.

12) 박준현, “프랑스의 PACS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4권 3호, 127-128면 (2022).

13) 김상호, 미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성혼 기피를 위해 주로 활용되었다. 2020년 기준 PACS 총 173,894건 중, 동성 간 PACS의 수는 7,983건으로 5%미만이며, 95% 정도는 이성간 PACS이다.¹⁴⁾

2) 혼인에 미치는 영향 : 혼인을 감소

제정 당시의 입법목적과는 다르게 PACS는 프랑스의 대다수 남성과 여성이 열 명 중 아홉 명 정도의 비율로 이성혼 대신에 선택하고 있는 제도로 변질되었다.¹⁵⁾ 그런데, 프랑스 국립 인구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에 파트너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시민연대계약의 총 수는 196,000건을 넘어섰고¹⁶⁾, 곧 시민연대계약이 혼인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¹⁷⁾ 반면에 2019년에 혼인은 225,000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23%가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220,0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동성간의 동거를 법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도입된 PACS가 혼인에 강력한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¹⁸⁾

3) 자녀에 미치는 영향

PACS의 부정적 영향은 아이들이 안정적이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혼인과 달리, PACS는 당사자 간에 일체의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재산적 효력만이 인정된다.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자녀가 태어나도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아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되지 않는다.¹⁹⁾ 부와 자녀는 친자관계준부확인 소나 임의인지 등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만 친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혼인과 달리 공동입양이 불가능하고, 각 당사자가 독신자로서 입양할 수 있으나 파트너에게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²⁰⁾ 따라서, 입양된 자녀는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입양한 부 또는 모의) 파트너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입양한 부 또는 모와의 관계와 달리 법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파트너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지 우려가 있다. 혼인관계에 있는 생물학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우에 비해,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거 관계에서 한 당사자의 자녀에 대해 혈연관계가 없는 다른 당사자가 방임, 학대를

2016년 4월 4일, 4면

14) 박준혁, 앞의 논문, 122면.

15) 이상욱, 앞의 글, 7면.

16) 이 중 90%가 이성커플이다[이은송, 시민연대계약(PACS)으로 보는 건강가정기본법, 브레이크 뉴스, 2021년 5월 18일, <https://m.breaknews.com/a.html?uid=807197> (2023년 1월 6일 검색)].

17)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Is the number of PACS civil unions in France the same as the number of marriages?, June 2022, https://www.ined.fr/en/everything_about_population/demographic-facts-sheets/faq/is-the-number-of-pacs-civil-unions-in-france-the-same-as-the-number-of-marriages/ (2023년 1월 6일 검색).

18) 이상욱, 앞의 글, 13면. 프랑스에 체류하는 한국인 유학생이나 연수생 여성들이 프랑스 남성과 사귀게 되었을 때 청혼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 남성은 PACS를 생각한 반면에 한국 여성들은 혼인신고하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중에 혼인을 가장한 이 제도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무척 당황하게 되었다고 한다.

19) 위의 글, 10면.

20) 위의 글, 11면.

할 가능성은 현저히 증가한다.²¹⁾

	이성간 PACS 성립 수 (총 PACS)	출생아 수		이성간 PACS 성립 수 (총 PACS)	출생아 수
2000	16,859 (22,271)	744,800	2017	188,233 (195,633)	730,200
2001	16,306 (19,629)	770,900	2018	200,282 (208,871)	719,700
2002	21,683 (25,309)	761,600	2019	188,014 (196,370)	714,000

[표 1] 프랑스의 PACS와 출생아 수 (2000-2002, 2017-2019)²²⁾

프랑스에서 1999년 혼외 출산율은 40% 정도에서 2021년 63.5%로 증가하였다(아래 [그래프 1] 참조).²³⁾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1.9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PACS 도입 후에 혼인 외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양육책임이 강화되어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²⁴⁾도 있지만 PACS 도입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²⁵⁾ PACS를 통해 기대했던 출생율 증가는 미미(위 [표1]에서 보듯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증가하였지만 2016년 이래 감소세로 접어들)하다. 18세~39세 커플의 PACS의 46%가 자녀를 갖지 않는데 반해 같은 연령대 혼인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15%로 현저히 낮으며, 이성간 PACS 성립 건수 2000년 대비 2017년 약 10배 증가했지만 이 기간 PACS 통한 출산건수 감소했음도 주목해야 한다.²⁶⁾ 반면, PACS 도입 전 1999년에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2021년에 63.5%로 증가²⁷⁾하는 전술한

21) 모친의 남자친구와 같이 사는 아동은, 결혼한 생물학적 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 대비,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6배 높다. W. Bradford Wilcox, Suffer the Little Children: Cohabitation and the Abuse of America's Children, Public Discourse, Apr.22, 2001. 비슷한 결과의 연구로는 Stiffman MN1, Schnitzer PG, Adam P, Kruse RI, Weigman BG, Household composition and risk of fatal child maltreatment, Pediatrics, Apr. 2002, 615-21; Radhakrishna A, Bou-Saada IE Hunter WM, Catellier DJ, Kotch JB, Are father surrogates a risk factor for child maltreatment?, Child Maltreat., Nov. 2001, 281-9.

22) Statista, Total number of civil partnership contracted in France from 1999 to 2022, available at <https://www.statista.com/> (2023.4.19. 마지막 방문); 김상용·안문희,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중앙법학 제24집 3호, 2022.9., p.40.

23) 김상호, 앞의 글,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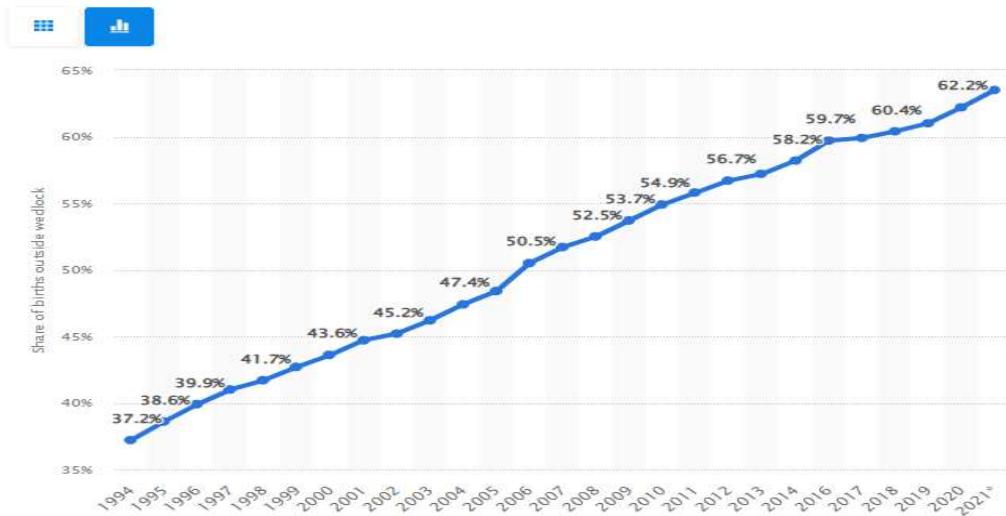
24) 김상호, 위의 글, 4면.

25) 김상용·안문희, 앞의 논문, 같은 면; 박준혁, 앞의 논문, 122면.

26) 박준혁, 앞의 논문, 122면.

문제는 혼외 출생자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육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10명 중 6.3명 이상이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마치 PACS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이며 중대한 정책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PACS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국가가 간섭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도 아니다.²⁸⁾ 간편한 결합과 손쉬운 해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에 혼인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최상의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시민연대계약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다.

Percentage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in France from 1994 to 2021



[그래프1] 프랑스 연도별 혼인 외 출산율(출처: Statista²⁹⁾)

(2) 영국

1) 시민동반자 제도

영국에서 2004년 제정된 2004년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Act 2004)」은 동성커플에게 혼인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였다. 처음에는 동성혼 합법화의 대안으로서 동거하는 동성커플에게 ‘혼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동반자 관계(partnership)’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혼인

27) Statista, Percentage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in France from 1994 to 2021, November 15,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57229/births-out-of-wedlock-france/> (2023년 1월 6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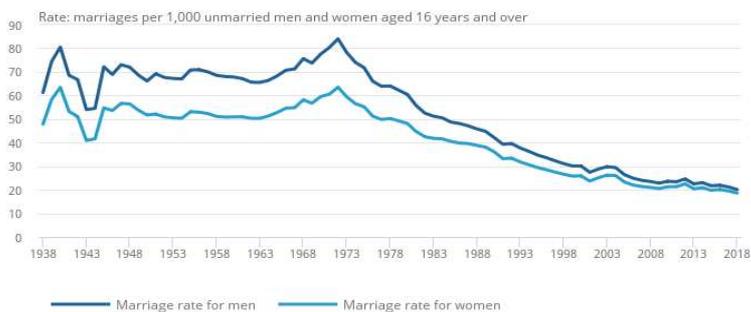
28) 김상호, 앞의 글, 4면.

29) Statista, Percentage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in France from 1994 to 2021, op. cit.

신고'와 '이혼' 용어 대신에 시민동반자 '등록(registration)'과 '해소(dissolu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성간에만 허용되는 '혼인'과의 차이를 두려고 하였고, 이 시민동반자 제도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였다.³⁰⁾ 2010년 평등법의 전면개정, 2013년 「동성혼인법 [Marriage (Same Sex Couples) Act 2013]」을 제정하면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그럼에도 시민동반자법은 유지되었고 영국 대법원은 2018년에 시민동반자 제도를 동성커플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시하면서 이성커플에게도 동반자제도의 혜택을 허용하도록 「시민동반자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³¹⁾ 이에 따라, 2019년에 영국 의회는 「시민동반자법 개정안(Civil Partnership, Marriage and Deaths (Registration etc) Act 2019)」을 통과시켰고, 2019년 12월 31일부터 영국에서는 동성 동거 커플 뿐만 아니라 이성 동거 커플도 혼인 대신에 시민동반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은 동성간 시민동반자법 → 평등법 → 동성혼인법 → 시민동반자법 개정(동성간 및 이성간 동반자 허용)이 순차적으로 법제화되었다. 이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교육의 법적 기반이 되어 10대 트랜스젠더 폭증 국립의료원 젠더클리닉 상대의 소송, 젠더클리닉 폐쇄 등의 갈등을 낳고 있다. 후술하는 바, 혼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혼인을 하락과 동거율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2) 혼인율, 동거율과 시민동반자 등록율

Figure 1: Marriage rates have generally fallen since their peak in 1972
Marriage rates for opposite-sex couples, England and Wales, 1938 to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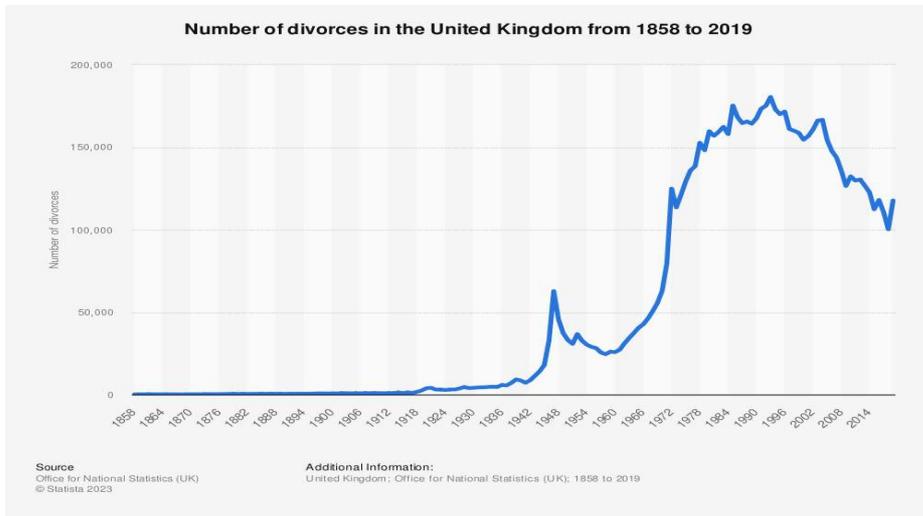
Sour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Marriages in England and Wales

[그래프2] 1938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의 이성혼 혼인율(16세 이상 1,000명의 미혼 남성과 여성별 혼인 건수)(남색: 남성의 혼인율, 청색: 여성의 혼인율) (출처: 영국 국립통계청³²⁾)

30) 명재진·연취현·음선필·이상현·전윤성·현숙경, 앞의 책, 45면.

31) R (on the application of Steinfeld and Keidan) v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8] UKSC 32.

영국의 혼인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위 [그래프2]에서 보여주듯, 영국 국립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의 이성간 혼인율은 186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³³⁾ 2019년의 이성간 혼인율은 1,000명의 미혼 남성 중에 18.6명, 1,000명의 미혼 여성 중에는 17.2명으로 1972년 이후로 50%가 감소한 수치다(2019년의 총 이성혼은 213,122건이었는데, 2018년 대비 6.5% 감소하였다).³⁴⁾ 영국 국립 통계청은 이러한 이성혼 감소가 혼인을 연기하는 남성과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혼인의 전단계로 또는 혼인의 대안으로 혼인보다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이 증가한 결과로 보고 있다.³⁵⁾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10명 중 9명이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있다(88%).³⁶⁾ 1997년에는 69%, 2007년에는 81%였던 동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프3] 1858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의 이혼 건수(출처: Statista³⁷⁾)

3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Marriage rates, Marriages in England and Wales: 2018, August 10, 2021,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marriagecohabitationandcivilpartnerships/bulletins/marriagesinenglandandwalesprovisional/2018> (2023년 2월 9일 검색).

3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Marriages in England and Wales: 2019, May 19, 2022,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marriagecohabitationandcivilpartnerships/bulletins/marriagesinenglandandwalesprovisional/2019> (2023년 1월 5일 검색).

34) 2019년의 동성간 혼인은 총 6,728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다.

3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p. cit.

36)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igure 7: Nearly 9 out of 10 opposite-sex couples cohabited before marriage in 2017, Marriages in England and Wales: 2017, April 14, 2020,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marriagecohabitationandcivilpartnerships/bulletins/marriagesinenglandandwalesprovisional/2017> (2023년 1월 5일 검색).

한편, 2010년 영국 16세 이상 인구 중 (혼인 또는 시민 동반자 등록을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비율은 11.3% 였고, 2020년 기준으로는 16세 이상 인구 중에 (혼인이나 시민 동반자 등록을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비율이 13.1%(약 632.6만명³⁸⁾)가 되었다.³⁹⁾ 그런데, 이성 동거 커플에게 시민동반자 등록을 허용하기 시작한 2020년 이성간 시민 동반자 등록 건수는 7,566건(총 15,132명)이었고, 2021년에는 5,692건(총 11,384명)으로 감소하였다.⁴⁰⁾ 같은 기간에 동성간 시민 동반자 등록 건수는 이보다 더 적은데, 2020년에 785건(총 1,570명), 2021년에 1,039(2,078명)건으로, 영국의 16세 이상 인구 중 혼인이나 시민 동반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 1000명 당 각각 0.1명(2020년) 및 0.1명(2021년)에 지나지 않는다.⁴¹⁾ 2020년을 기준으로 동성 및 이성간을 모두 합쳐도 16세 이상 시민 동반자 등록을 한 인구는 16,70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32.6만명은 시민동반자 등록 없이 동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동거 인구의 약 0.26%만이 시민 동반자 등록 제도를 이용했다.

위의 통계는 연인들간 동거는 확대되는 반면, 시민동반자 등록제도는 아직까지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물론 이성간 시민 동반자 제도는 2019년 12월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 초기 단계에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겠으나, 영국에서는 시민 동반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거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함에도 시민 동반자 등록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7) Statista, Number of divorces in the United Kingdom from 1858 to 2019, February 7m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81565/number-of-divorces-in-the-united-kingdom-uk/> (2023년 2월 9일 검색).

38)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Dataset: Population estimates by marital status and living arrangements, England and Wales: 2020, December 16, 2021,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datasets/populationestimatesbymaritalstatusandlivingarrangements> (2023년 1월 5일 검색). 2020년 기준 영국의 16세 이상 인구 중 혼인커플과 시민동반자등록커플의 합은 약 2,326만명이고, 커플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약 3,012만명 정도이다.

39)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opulation estimates by marital status and living arrangements, England and Wales: 2020, December 16, 2021,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bulletins/populationestimatesbymaritalstatusandlivingarrangements/2020> (2023년 1월 5일 검색).

4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ivil partnership formations, December 9, 2022,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marriagecohabitationandcivilpartnerships/datasets/civilpartnershipstatisticsunitedkingdomcivilpartnershipformations> (2023년 1월 5일 검색).

41) Ibid.

3) 자녀에 미치는 영향

동거율 증가의 결과로 예측되는 바, 2021년 기준 영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51%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이는 1845년에 기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혼인이나 시민 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추월했다. 혼외 출산율의 증가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현상이다. 시민동반자법, 동성결혼법과 같은 가족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혼외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래프5 참조]. 영국에서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무책주의)로 전환하는 1969년 이혼개혁법⁴³⁾의 시행과 함께 1970년대부터 급증한 이혼율[그래프 3 참조]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 이혼율은 80-90년대 최고조에 달하는데, 2004년 동반자법 전후에는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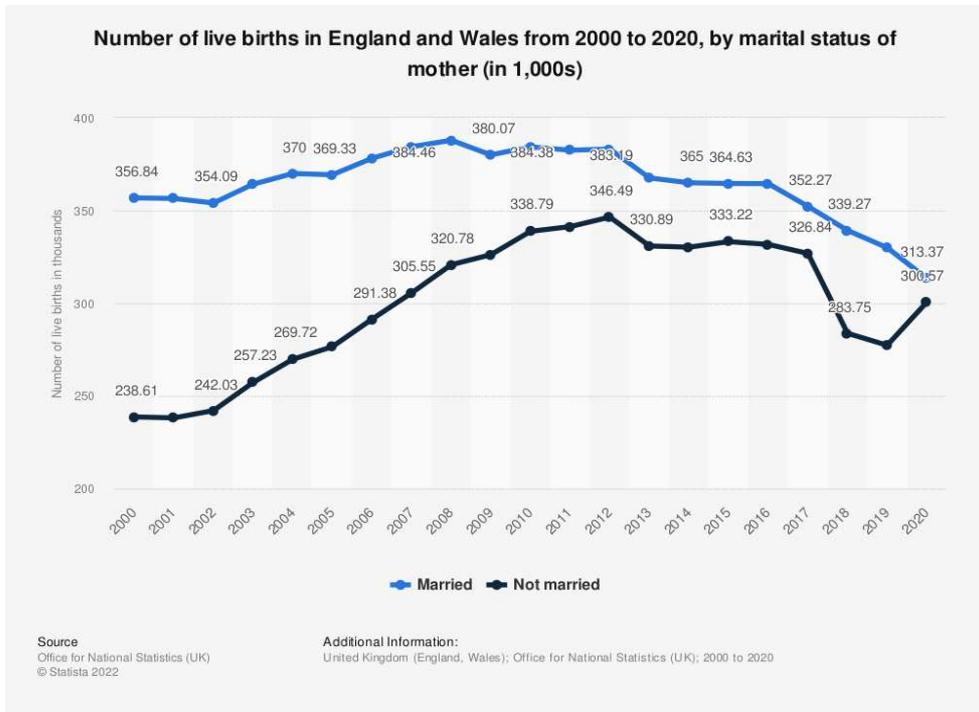
1967년 동성에 비범죄화, 그리고 2004년 동성 커플의 시민동반자 관계 등록의 제도화를 통해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이성혼 커플과 그들의 자녀라는 전통적 가족 모델에 의존한다는 사고를 점차로 약화시켜 왔다.⁴⁴⁾ 정서적 유대가 혼인을 통해 출생한 자녀보다 떨어지는 혼외자의 증가는 청소년기 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혼인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출생 자녀는 동거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인 경우에도 혼인한 부부의 자녀에 비해, ①부모가 헤어지는 것을 볼 가능성이 세 배 이상 높고, ②빈곤에 처할 가능성,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네 배 이상 높으며, ③약물을 사용하거나 우울증으로 고통받거나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도 높다.⁴⁵⁾

42)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Over half of children in England and Wales now born to unmarried parents, August 25, 2022, <https://www.manchester.ac.uk/discover/news/over-half-of-children-in-england-and-wales-now-born-to-unmarried-parents/> (2023년 1월 5일 검색).

43) 영국에서 1969년에 여성의 권리 신장 목적으로 제정된 「이혼개혁법(Divorce Reform Act 1969)」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간통 등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요건을 폐지하는 등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을 하였다. 즉, 합의 후 2년간의 별거 또는 5년간의 별거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혼인의 파탄'만 입증을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이혼개혁법이 이혼율 증가와 혼인율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4)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op. cit.

45) Alysse ElHage, "For Kids, Parental Cohabitation and Marriage are NOT Interchangeable",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May 7, 2015, available at <https://ifstudies.org/blog/for-kids-parental-cohabitation-and-marriage-are-not-interchangeable> (2023.3.16. 검색); Richard V. Reeves and Eleanor Krause, Cohabiting parents differ from married ones in three big ways, Apr.5, 2017,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edu/research/cohabiting-parents-differ-from-married-ones-in-three-big-ways/> (2023.3.16. 검색)



[그래프4] 모(母)의 혼인 여부에 따라 분류한 영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청색:기혼모, 흑색:미혼모)(단위:천명)(출처: Statista⁴⁶⁾)

결국 동거지원법은 아동에 대한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의 효과적인 보장이라는 가족의 중요한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혼외 출생의 증가와 출생 아동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증명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즉, ‘동거의 법제 수용 → 혼외 출생아 증가 →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 → 동거⁴⁷⁾ 비율 증가 → 전체 출산아 수 감소, 혼외 출산율 증가’로 이어져 차세대 건전한 사회적응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⁴⁸⁾ [그래프4]에서 보는 바, 출산아 숫자는 2008년~2012년이 700,000명 이상이지만, 2013년 이래 하락세이다. 특히 2020년 출생아는 613,936명으로 2010년 723,165명 대비 15% 하락,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된

46) Statista, Number of live births in England and Wales from 2000 to 2020, by marital status of mother, February 4,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4571/live-births-in-england-wales-uk-by-age-and-marital-status-of-mother/> (2023년 1월 16일 검색).

47) 이혼이 확대되던 시절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는 결혼을 조심스러워 하여 종종 동거를 선택한다(케이티 파우스트: 스테이시 매닝, 하선희 옮김, 앞의 책, 187면).

48) 혼외 출생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이 20년 후 동거율, 이혼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미국, 서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2004년 639,721명 대비 4% 하락했다.⁴⁹⁾

(3) 네덜란드

1998년 네덜란드는 동성혼인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반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성커플도 동반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에서 2001년까지 동반자 등록을 한 이성커플은 전체 등록 건수의 1/3을 차지했다.⁵⁰⁾ 3년 후인 2001년 네덜란드 의회는 전 세계 최초로 가족법(Civil Code Family) 개정(Title 5 Article 30)⁵¹⁾을 통해 동성결혼을 수용하였다.

또, 아주 간소한 절차를 통해 혼인을 등록 동반자(registered partnership) 관계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²⁾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신속 이혼(flash annulment/divorce)’이나 “번개 이혼(lightning divorce, flits scheidingen)”이라는 현상⁵³⁾을 통해 부부의 합의 하에 그들의 혼인을 등록 동반자 관계로 하향시킬 것을 결정하고, 곧이어 신속하게 등록 동반자 관계를 해소토록 하는 통로가 되었다. 혼인을 등록 동반자로 (하향) 전환한 건수들 중 60%가 1달 내 동반자 관계가 종료되었고 90%가 6달 내 종료되었다.⁵⁴⁾ 학자들은 신속 이혼 절차와 함께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성급한 법 개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혼을 야기했고,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약정에서 네덜란드법을 선택해 손쉽게 이혼하게 되는 국제사법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⁵⁵⁾. 이와 같은 의도치 않게 마련된 절차를 이용한 이성 부부의 수는 증가(2002년 4,000쌍, 2004년 5000쌍)해, 이혼과 신속 이혼 등 혼인 해소가 역사적으로

49)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Births in England and Wales: summary tables, 2020 edition of this dataset, available at <https://www.ons.gov.uk/> (2023년 5월22일 검색)

50) Independent, Equal marriage around the world, September 19, 2012, <https://www.independent.co.uk/voices/comment/equal-marriage-around-the-world-8153205.html> (2023년 1월 6일 검색).

51) 동성결혼 허용법(Act of Opening Marriage to Same-Sex Couples)이라는 명칭으로 가족법 개정을 통해 혼인이 2인의 이성간 또는 2인의 동성간에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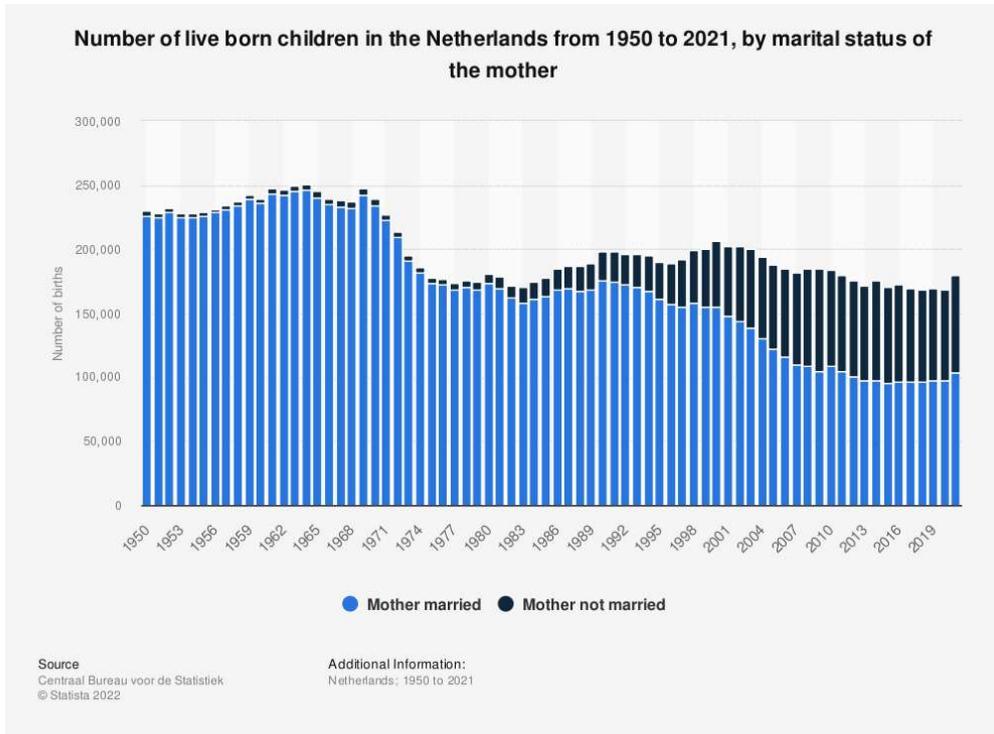
52) Wendy Schrama, “The Netherlands, Reforms in Dutch family law during the course of 2001: increased pluriformity and complexity”, The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Bristol (Family Law), 2002, page 278.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전환 서식에 의해 간단히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혼인이나 등록 동반자 관계는 전환 서류가 등록부에 입력되면 종료된다.

53) Patrick Fagan and Grace Smith, The Transatlantic Divide on Marriage: Dutch Data and the U.S. Debate on Same-Sex Unions, The Heritage Foundation, September 29, 2004, <https://www.heritage.org/marriage-and-family/report/the-transatlantic-divide-marriage-dutch-data-and-the-usdebate-same-sex> (2023년 1월 6일 검색).

54) Richard Frimston, British couple to go Dutch?, Step Journal, April 1, 2011, <https://www.step.org/step-journal/step-journal-april-2011/british-couples-go-dutch> (2023년 1월 16일 검색).

55) Ian Sumner, Dissolution of Registered Partnerships: Excursion in Conversion, IFL, November 2004, pages 231~237.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증하게 됨에 따라 혼인제도의 붕괴가 가속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⁵⁶⁾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2009년 3월 가족법을 다시 개정해 혼인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낮추는 전환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래프5] 모(母)의 혼인 여부에 따라 분류한 네덜란드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청색:기혼모, 흑색:미혼모)(출처: Statista⁵⁷⁾)

프랑스, 영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위 [그래프5]에서 보듯 2000년대 초 혼인의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출산아 수가 200,000명을 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이래 혼외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혼인중 출생아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출산아 수는 감소세로 유지된다. 2019년 총 출생아는 169,680명으로 혼인 중 출산한 신생아가 97,958명인 반면에 혼외출생 신생아는 71,722명으로, 혼인의 출산율이 42.2%이다.⁵⁸⁾ 출생아 수도 감소 추세이며 혼외출생자 확대 경향

56) 성중탁, 동성혼의 법적 쟁점과 전망,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화우공익재단 제5회 공익세미나 자료집, 2017년 10월 19일, 37면.

57)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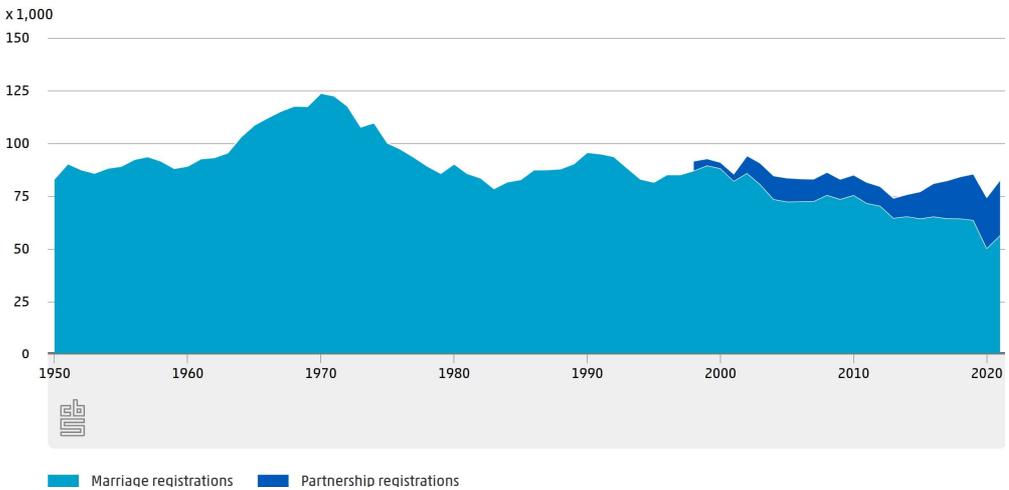
58) Statista, Number of live born children in the Netherlands from 1950 to 2021, by marital status of the mother, September 23,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20952/netherlands-number-of-live-born-children-by-marital-status>

은 동반자제도가 출생아를 불안정한 양육환경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프6]에서 보듯, 네덜란드 역시, 동반자등록제 도입후 혼인을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1998년에 혼인 등록 건수가 86,956건이었는데, 2021년 56,419건으로 35%가 감소하였다. 반면, 동반자 커플 등록 건 수는 1998년 4,626건이었지만, 2021년 26,149건으로 465% 증가하였다.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s



[그래프 6] 혼인과 동반자제도 Statistics Netherlands⁵⁹⁾

IV.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과 생활동반자법안의 재검토 필요성

동성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거나 국제법적 의무라는 식의 논증은 오류이다. 동성간 끌림이라는 성적지향이 생략적이라는 논증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남녀 부부의 혼인과 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질서’를 통해 이루어진 헌법 제36조와 이에 기반한 법체계에 오류 섞인 논증으로 대항하고 있는 셈이다. 한부모를 부당히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남녀 부부의 혼인과 그를 통해 출생·양육된 자녀의 안정에 기반한 혼인 가족제도를 차별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동거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가족 범위의 확대를 채택한 국가들-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편부(또는 편모)와 살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⁶⁰⁾ 동거를 법제로 수용할 때, ①혼외 출생자는 증가하고,

-of-the-mother/ (2023년 1월 6일 검색).

59) Statistics Netherland, Marriages, available at <https://www.cbs.nl/> (2023.4.19.마지막 방문)

60) 프랑스가 23%(2016), 영국이 33%(2010~2011), 네덜란드가 19%(2015), 미국이 31%(2018), 캐나다가 19%(2017)인 반면, 일본은 12%(2015)이다.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Figure 1 Living arrangements, World Family Map 2019, 2019, page 61.

②혼인율은 감소하며 동거는 증가해, ③이렇게 양육된 혼외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성장해 이혼 등의 높은 가능성을 내포하며 살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는 전혀 없으며, 프랑스에서 보듯 2017년부터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시민결합 도입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동성혼의 대안으로 설계된 프랑스의 시민결합 PACS가 이성간 동거에 적용되면서 등록된 시민결합의 95%가 이성간 커플인 것이며 매년 많은 이성커플이 혼인보다 동거를 선택하며 혼외 출생자가 출생아의 63%를 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생활동반자제도나 시민결합을 채택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혼외출산율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 판결과 법안은 대법원에서 파기되거나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는다면, 동성커플 증가, 이성 동거 증가, 혼인율 감소, 혼외출생자 증가,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부정적 영향, 이혼율 증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동성혼 합법화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기에 동성혼마저 합법화된다면 출산율 감소,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부정적 영향 증가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세계관은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이러한 욕구 중심의 생활 양태를 보호하는 판결과 법제에 대해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를 시행했던 국가들이 고결한 혼인의 가치를 전했던 개신교, 카톨릭 선교사들을 보냈던 국가들이란 점에서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명 존중, 혼인, 혼인중 성적 관계를 통한 자녀 출산, 입양 지원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가족정책과 법제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